

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29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2. .
제 출 자 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·복지·마을공동체 간 협치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 추진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(안 제3조~제4조)
 - 사업 기본 방향, 지원 대상,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정
- 나. 협의체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~제14조)
 - 효사랑 주치의 협의체 기능,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
- 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8. 12. 28. ~ 2019. 1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르신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건강평가 및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르신”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”이란 어르신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사람(이하 “지원 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건강평가, 건강상담 등 어르신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효사랑건강주치의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기본 방향
2.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

3.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지원)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약품 등
2.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서 활동하는 개인,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교육비 등
3.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
제5조(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
2. 보건, 복지, 마을공동체 등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분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
3.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특정 성(性)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복지부서 국장 및 보건소장

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

가.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
나. 구 의사회 및 구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의사 및 한의사

다. 보건·의료·복지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

라.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

마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협의체 업무를

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: 연 1회 이상

2. 임시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

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간사)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호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
제12조(회의록 작성)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 등)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의약품지원 및 교육비 등(안 제4조), 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(안 제13조)
 - 지원(의료소모품): 2,000,000원×5종 = 10,000,000원
 - 교육비: 300,000원×17명 = 5,100,000원
 - 수 당: 100,000원×20명×4회 = 8,000,000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생략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약품 지원 및 교육비, 위원회 참석 수당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- 성동구 질병예방과 이진화 (연락처 02-2286-7085)

< 관 계 법 규 >

□ 지역보건법

제11조(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)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1.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
2.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·연구 및 평가
3. 보건의료인 및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
4.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5.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

건의료서비스의 제공

- 가. 국민건강증진·구강건강·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
- 나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- 다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
- 라.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
- 마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
- 바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
- 사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

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국민건강증진법

제19조(건강증진사업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

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7. 12. 13., 2008.

2. 29., 2010. 1. 18., 2017. 12. 30.>

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
2. 영양관리

3. 구강건강의 관리

4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

5. 지역사회외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

6.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
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·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2. 21.
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9. 2. 8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9. 2. 11.

다. 상정일자: 2019. 2. 20.

(제24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보건소장

나. 제안이유

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·복지·마을공동체 간 협치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 추진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(안 제3조~제4조)

- 사업 기본 방향, 지원 대상,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정

나. 협의체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~제14조)

- 효사랑 주치의 협의체 기능,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12. 28. ~ 2019. 1. 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- 본 제정안은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 등으로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- 100세 시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, 구에서는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건강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7년 9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
- 본 제정안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 성과를 기반으로 고령 어르신에게 보건·의료·복지를 연계한 건강관리 사업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,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보건복지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내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 증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임
- 아울러,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여겨짐

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